

#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Usage Needs fo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이용표, 송승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ng-Pyo Lee(ly21@catholic.ac.kr), Seung-Yeon Song(yeon0825@hanmail.net)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관련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앤더슨 행동모형을 근거로 발달장애인 부모 451명을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욕구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2011년 서울시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돌봄자가 직업이 없는 집단일수록, 피후견 대상인 발달장애인이 남성인 집단이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나 사회보장제도 관련요인에서는 가구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욕구요인 중에서는 제3자에 의한 돌봄욕구가 존재할수록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장애등급, 돌봄부담의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에 관련되는 비용의 정부지원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욕구와 관련된 제3자 돌봄욕구 개념 및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중심어 : | 성년후견제도 | 발달장애인 | 이용욕구 | 앤더슨 행동모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usage related predictors to activate Adult Guardianship System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have analyzed the survey of parent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Andersen's behavioral model.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2011 Welfare Needs Assessment of Seoul middle and senior-aged Family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analysis method, the study applied used SPSS 22.0,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increases meaningfully if the parents does not have occupation, and the subjec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male. In income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wise,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show remarkably large rating if the average income is high and the desire to be cared by others is high. But in cas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mmunication skills, the degree of disability, burden of caring does not have effect on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conclusion for this research is, first, to activate vigorous usage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required. Second, the following study is needed to explain to the concept of the needs caring by others and the cultural factors relating to the usage need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 keyword : | Adult Guardianship System |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Usage Needs | The Andersen's Behavioral Model |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의 지원(NRF-2013S1A3A2043353)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접수일자 : 2016년 04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5월 17일

수정일자 : 2016년 05월 04일

교신저자 : 송승연, e-mail : yeon0825@hanmail.net

## I. 서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2년이 경과하였다. 이전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획일적으로 본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고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타인(후견인)의 전단적 결정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1] 한 것에 비하여,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인권보호에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함으로써 행위능력 제한의 범위를 축소하고,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민법 제9조, 제10조).

종래의 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하여 인지장애를 가진 고령자의 재산관리상 갈등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이용되어왔다. 노년기의 일정 시기에 발생하는 치매와는 달리,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유아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 재산을 소유하지 않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가족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후견의 필요성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 이외에 후견인이 보충적으로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개정민법 제947조의 2)으로써 신상보호를 새로운 후견사무로 도입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약한 자기방어능력으로 인하여 착취, 학대 그리고 방임 등 인권침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민법 개정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 즉 성년후견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권리옹호제도로서 크게는 사회복지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1].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시행(2013년 7월 1일) 이후 지난 2014년 5월까지 11개월 간 총 성년후견 등 심판청구 사건은 1,813건으로 청구유형별로는 성년후견 유형이 1,483건(82.3%), 한정후견 190건(10.5%), 특정후견 129건(7.1%), 임의후견 11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2]. 현재까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성년후견 이용건수의 증가 추세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내용적으로도 종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와는 연속성이 강한 성년후견 유형이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새로 도입된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 또는 후견계약의 이용은 각각

10% 이내로 저조한 편이다[3]. 다만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을위한후견사업중앙지원단에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후견상담 신청건수 총 127건 중 구체적으로 상담이 진행된 104건을 신청사유로 분류하였을 때, 인권침해 발생 48건, 부채 및 재산관리 32건, 자립지원 13건, 사고예방 9건 그리고 기타 2건 등으로 인권침해와 관련된 신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을위한후견사업중앙지원단 운영상황은 성년후견제도가 재산관리를 위한 목적을 넘어 인권옹호와 생활상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류해 보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책상의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들이다[4-7]. 둘째,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들이다[8-10]. 셋째, 특수교육학계의 성년후견 관련연구로는 자기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훈련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1-13]. 넷째, 사회복지학계에서는 거주시설 발달장애인들의 자기결정 경험이나 관련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14][15].

본 연구는 전술한 것처럼 제도 도입 이후에도 미미한 상황에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욕구와 관련된 복지부의 실태조사[16]에서는 후견대상자 본인은 제도의 이용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27.3%인데 비하여, 부모(16.2%), 자녀(6.4%)의 경우에는 후견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이 연구는 치매노인과 가족을 포함한 연구로서 발달장애인 및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다. 전동일 외[17]의 발달장애인 부모와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장애인 가족과 서비스제공자들의 후견제도 이용수요가 가족 63.5%, 서비스제공자 63.1%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두 연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관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이용욕구와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성년후

건제도 이용욕구 요인들을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로써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를 가지지만, 제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성년후견제 이용욕구 예측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복지와 성년후견제도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18]. 여기에서 사회복지란 이론적, 개념적 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의 공동책임에 대한 국가개입의 제도화된 체계를 영국에서는 사회서비스, 미국에서 사회복지장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영역과 내용을 사회복지장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기본법(제3조 제1항)은 사회복지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장제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 빈곤계층에 대한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복지기본 제3조 제4항)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비

하여 경제적 급부의 성격이 약하며, 개인적 문제해결과 성장을 위한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는 대면적 서비스를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종래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왔으나 2013년 사회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개정하고 그 범주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범주의 확장은 급속한 노령화, 출산율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적 위기를 증가시면서 새로운 돌봄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개념의 확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돌봄이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19]이며, 환자, 노인, 장애인, 아동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를 필연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사회적 돌봄은 유급·무급의 성격, 공식·비공식의 성격을 가지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측면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20]. 전통사회에서 주로 무급·비공식 노동이었던 돌봄은 현대 사회에서 유급·공식 노동으로 점차 이전해가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도 단순한 신체적 수발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회적 행동 수행과 생활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즉 사회적 돌봄은 신체적 돌봄과 신상보호를 위한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전의 금치산제도와 다른 성년후견제도의 기능은 정신적 능력의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보호의 제공이다. 신상보호의 구체적 내용과 범주는 개별 사회복지법령의 해석에서 후견인이 가능한 업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크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21]. 첫째, 시설입소와 관련된 법정대리권으로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상 시설입소(입원)의 신청, 계약체결, 동의 둘째,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근로계약체결, 임금수령에 관한 대리권 셋째, 노령자나 장애인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에 관한 계좌의 개설, 연금의 인출 등에 관한 권한 넷째,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등에 관한 신청 및 계약체결 등이 있다.

사회복지제도에 의하여 의료, 돌봄, 거주장소 등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용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고 반영되었을 때 비로소 복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이나 지역사회와 격리된 대형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거주는 실제 이용자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상 정신적 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어서, 특정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문제보다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지 선택하는 절차에서의 권리가 개인의 복리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임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 신상보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의 지극히 본질적 요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수반되는 신청, 계약체결, 임금수령 및 인출 그리고 연금의 수령 및 인출 등에 관한 후견행위는 그 자체로 중요한 권리옹호서비스[22]이며, 이러한 후견행위의 근거가 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성년후견 수요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 치료·요양·주거 등 복리에 관한 신상보호 제공 등을 위해 사회복지제도로써 도입되었다[21]고 볼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후견심판절차, 후견인선임, 후견인보수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3].

## 2.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관한 이론적 접근

성년후견제도는 현대 사회복지국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됨에 따라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209호)의 제안이유). 성년후견의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후견인은 친족은 물론 제3자

와 법인도 선임될 수 있으며, 친족이 아닌 경우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전문가후견과 일반시민에 의한 공공후견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견비용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24].<sup>1)</sup>

성년후견제도를 정신적 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람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제도로 본다면, 왜 국가가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에 개입하는 가하는 방향과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성년후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하는 측면에서 이용욕구에 접근해볼 수 있다.

Abrams(1986)는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개입을 설명하기 위해 계몽이론(the enlightenment theory), 필요이론(the necessity theory), 행동이론(the action theory) 그리고 권력이론(the power theory) 등 네 가지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25]. 첫째, 계몽이론은 사회복지를 이성과 휴머니즘에 입각한 여론의 영향력의 결과로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년후견은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인하여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한 이성적 성찰의 결과로 형성된 제도로 이해한다. 둘째, 필요이론(the necessity theory)에서는 사회복지의 산업화가 가져다준 가족기능의 약화와 같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년후견은 가족기능 약화로 인한 돌봄자의 대체로 이해된다. 셋째, 행동이론(the action theory)에서는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역동적 타협의 결과로 이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는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장애인가족단체, 인권단체 등의 토론과 운동과정에서의 타협의 결과로 본다. 넷째, 권력이론(the power theory)은 사회복지제도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적 공급방향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이다.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이 지역사회를 토대로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권익옹호가 초점을 두는 서비스가 되는지 혹은 변호사·세무사들

1)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만 19세 이상)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심판청구(1인당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에 의한 재산관리에 중점되는 서비스로 제도화하는가의 문제를 권력관계를 통해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국가가 성년후견제도 혹은 성년후견을 통한 권익옹호서비스를 도입하고 특정한 제도로 발전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 제도를 선택하는 이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도이용을 기피하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욕구를 개인적 수준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이용예측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필요로 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서비스이용을 예측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으로는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과 앤더슨 행동모형(the Andersen's behavior model)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건강신념모델은 기대가치이론에 근거를 두고 개인의 신념, 동기, 지각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6][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이용예측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앤더슨 행동모형을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 예측에 적용한다. 앤더슨 행동모형은 서비스 이용예측을 위해 요인을 성별, 연령, 교육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 소득이나 사회보장제도 수급여부와 같은 제도이용 능력 및 수단을 가능요인(Enabling factor) 그리고 서비스이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을 욕구요인(Needs factor)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28]. 이모형의 강점은 발달장애인의 지적 장애수준이나 돌봄부담과 같은 직접적인 욕구요인 이외에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서비스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선행요인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가능요인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욕구요인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I.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앤더슨 행동모형을 이론적 분석틀로 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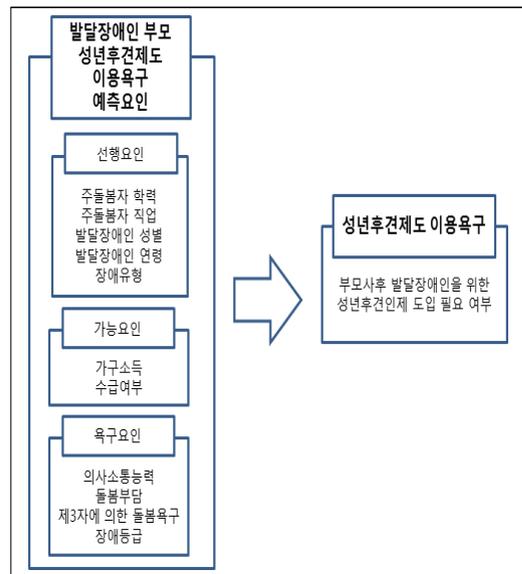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자료수집방법 및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시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부양실태, 건강상태,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달장애인가족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1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조사한 '서울시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29]'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예정과 관련하여 중·장년 발달장애인 가족의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므로 본 연구에 가장 적절한 데이터로 판단하여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로 최소표본을 균등할당 후 모집단 비중을 반영한 비례할당방식

을 적용하여 추출된 서울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만2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 50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25일간 조사원의 1:1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 분석대상에는 주돌봄자 중 부모에 해당하는 45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 3. 조사도구

#### 3.1 종속변수

본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인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서열척도로 측정된 발달장애인 부모의 '부모사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제의 도입 필요성' 인식에 대해 응답한 설문결과를 변형하였다. 즉, '약간 필요한 편'과 '매우 필요'는 '필요=1'로, 나머지는 '불필요=0'으로 간주하였다.

#### 3.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앤더슨 행동모형(Andersen's behavior model)에 근거한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 등의 관련 변인들이다. 선행요인으로는 주돌봄자 학력, 주돌봄자 직업유무, 발달장애인 성별, 발달장애인 연령, 장애유형을 투입하였다. 주돌봄자 학력은 무학(1)부터 대졸이상(5)까지로 측정하였고, 주돌봄자 직업유무는 직업이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 1로 변환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변환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연령은 2011년 당시 나이를 사용하였다. 장애유형은 자폐성장애는 0, 지적장애는 1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가능요인으로는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를 포함하였다. 2015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30]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우선 순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급여부는 가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가구소득은 척도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구별 월평균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수급여부는 수급인 경우는 0, 비 해당인 경우는 1로 구분하였다.

욕구요인으로는 의사소통수행능력, 돌봄부담, 제3자

에 의한 돌봄욕구, 장애등급을 투입하였다. 의사소통수행능력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수행능력을 확인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전혀 의사소통 불가능(1)'부터 '스스로 모든 의사소통가능(5)'으로 측정하였다. 값이 클수록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수행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돌봄부담의 경우 주돌봄자가 발달장애인의 부양으로 인한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담, 심리적 부담 3가지의 영역을 5점 리커트척도로 조사한 응답값의 합을 이용하였다. 값이 클수록 부담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3개 영역의 신뢰도(Cronbach의 alpha)는 .776으로 높은 수준이다.

제3자에 의한 돌봄욕구는 주 돌봄자 사후 발달장애인 생활전반지원과 관련된 문항을 활용하여 돌봄의 주체로 희망하는 것이 친인척인 경우 0, 3자인 경우 1로 구분하였다. 발달장애인 장애등급은 원래의 변수를 3범주로 구분하여 장애등급이 2급인 집단, 1급인 집단을 2개의 더미 변수로 구성하고 준거집단은 장애등급이 3급 이하인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인 발달장애인과 주돌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앤더슨 행동모형에 기반하여 선행요인과 가능요인, 그리고 욕구요인이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욕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선행요인·가능요인·욕구요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선행요인을 살펴보면, 주돌봄자 학력의 경우 중졸이하가 전체의 63.6%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돌봄자 직업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N=451)

변수		빈도	백분율(%)	
선행요인	주돌봄자 학력	무학	101	22.4
		초졸	83	18.4
		중졸	103	22.8
		고졸	135	29.9
		대졸이상	29	6.4
	주돌봄자 직업	무	143	31.7
		유	308	68.3
	발달장애인 성별	남	294	65.2
		여	157	34.8
	발달장애인 연령	20대	50	11.1
		30대	213	47.2
		40대	132	29.3
50대		56	12.4	
장애유형	지적장애	388	86.0	
	자폐성장애	63	14.0	
가능요인	가구월평균 소득	100만원이하	177	39.2
		101-150만원	95	21.1
		151-200만원	76	16.9
		201-300만원	76	16.9
		301만원이상	27	6.0
	수급여부	수급	229	50.8
비해당		222	49.2	
육구요인	의사소통수행능력	M(SD)	2.85(1.01)	
	돌봄부담	M(SD)	13.05(2.00)	
	제3자 돌봄육구	친인척	161	35.7
		3자	290	64.3
		3급 이하	161	35.7
	장애등급	2급	176	39.0
1급		114	25.3	
필요		320	71.0	
성년후견제도 육구인식	필요	320	71.0	
	불필요	131	29.0	

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68.3%로 없는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성별은 남성이 65.2%로 여성보다 많았다. 발달장애인 연령은 30대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5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86%로 자폐성장애 14%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능요인의 특성을 보면 가구월평균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39.2%를 차지하여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었고, 반면에 301만원 이상은 6.0%로 27명에 불과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를 보면 수급(50.8%)과 비해당(49.2%)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육구요인의 특성을 보면 의사소통수행능력의 경우 최대 5점으로, 평균은 2.85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부담의 경우 최대 15점이며,

평균 13.05점으로 전반적으로 부담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제3자에 의한 돌봄육구를 보면 3자가 64.3%로 친인척(3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발달장애인 장애등급의 2급이 39.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3급 이하(35.7%), 1급(25.3%) 순으로 나타났다.

성년후견제도 육구인식은 필요가 71.0%로 불필요 29%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육구 예측요인

앤더슨 행동모형에 기반하여 선행요인과 가능요인, 그리고 육구요인이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육구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종속변수인 성년후견제도 육구인식이 범주형 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VIF값은 1에서 2사이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선행요인(주돌봄자 직업, 발달장애인 성별, 장애유형)과 가능요인(가구월평균소득), 육구요인(제3자 돌봄육구) 모두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육구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요인, 가능요인, 육구요인을 독립변수로, 이용육구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분석 모형의 적합성은 Chi-square( $\chi^2$ ) 값이 69.279(p < .001), -2log Likelihood 값이 474.238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Hosmer-Lemeshow 검정  $\chi^2$ 값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아야 종속변수의 실제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가 작으며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할만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chi^2$ 값은 8.378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Nagelkerke R<sup>2</sup>을 살펴보았다. 종속변수인 성년후견제도 이용육구에 대해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0.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요인의 경우 주돌봄자 직업유무(0=무, 1=유), 발달장애인 성별(0=여, 1=남), 장애유형(0=지적장애, 1=자폐성 장애)이 발달장애인 부모의

표 2.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 예측 분석 결과

(N=451)

변수		종속변수 :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			
		B	S.E	Wald	Exp(b)
선행요인	주돌봄자 학력	.112	.131	.733	1.118
	주돌봄자 직업	-.911	.288	10.035	.402**
	발달장애인 성별	.493	.238	4.281	1.638*
	발달장애인연령	.033	.019	3.179	1.034
	발달장애인장애유형	1.799	.549	10.749	6.045***
가능요인	가구월평균소득	1.217	.324	14.133	3.376***
	수급여부	-.040	.282	.020	.961
욕구요인	의사소통수행능력	-.070	.138	.255	.933
	돌봄 부담	-.082	.071	1.343	.921
	제3자 돌봄욕구	.659	.250	6.967	1.933**
	발달장애인 장애등급 2급 (준거집단: 3급 이하)	-.063	.262	.057	.939
	발달장애인 장애등급 1급 (준거집단: 3급 이하)	.531	.341	2.422	1.701
상수		-13.147	3.990	10.857	.000***
X <sup>2</sup> = 69.279*** -2log Likelihood = 474.238 Nagelkerke R <sup>2</sup> = 0.203 Cox & Snell R <sup>2</sup> = .142 Hosmer-Lemeshow = 8.378(df=8)					

\*p<.05 \*\*p<.01, \*\*\*p<.001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기준 점인 0에 비해 1로 갈수록 종속변수(0=성년후견제도 불필요, 1=성년후견제도 필요)도 1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돌봄자 직업유무의 O.R 0.402은 역수를 취해야만 해석이 용이하다. 즉, 다른 예측변인들의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주돌봄자 직업이 없는 집단에 속한 사람이 직업이 있는 집단에 속한 사람보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가 생길 가능성(odds ratio)이 2.486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R=402, p <.01). 또한 남성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여성 발달장애인의 부모에 비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가 생길 가능성이 1.638배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O.R=1.638, p

<.05).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결과를 보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 비해,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6.045배 높아진다고 확인되었다(O.R=6.045, p <.001).

가능요인의 경우 가구월평균소득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월평균소득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구소득이 1단위 증가할수록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가 생길 가능성이 3.376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O.R=3.376, p <.001).

욕구요인은 제3자 돌봄욕구(0=친인척, 1=3자)만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돌봄자 사후 발달장애인 돌봄의 주체로 친인척을 희망하는 집단에 비해 3자를 희망하는 집단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가 생길 가능성이 1.933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O.R=1.933, p <.01).

## V. 연구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가 가진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를 위한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앤더슨 행동모형을 근거로 성년후견제도 이용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앤더슨 행동모형의 선행요인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주돌봄자가 직업이 없을수록, 피후견 대상인 발달장애인이 남성일수록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나 사회보장제도 수급여부와 같은 제도이용 능력 및 수단을 의미하는 가능요인에서는 가구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욕구요인에서는 제3자에 의한 돌봄욕구가 존재할수록 성년후견 이용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토대로 후견제도 및 관련연구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국가의 개입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가능요인인 소득이 성년후견제 이용예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욕구요인인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돌봄부담 수준, 장애등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서 욕구요인에 비해 가능요인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득요인과 같은 지불능력이 직접적인 장애관련 요인보다 후견제도 이용욕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이용지원제도의 질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불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효성이 있는 지원방안의 수립이 중요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욕구요인 중 제3자 돌봄욕구는 후견이용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돌봄은 친인척이 아닌 전문가나 공공시민후견인의 돌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후견제도 관련 연구의 새로운 과제를 남기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 돌봄부담 수준, 장애등급 등은 일반적으로 장애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견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제3자 돌봄욕구는 후견 이용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장애수준을 평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후견이용욕구를 설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모의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제3자 돌봄욕구 인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욕구개념과 관련요인에 관한 후속연구는 후견 이용욕구의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다.

셋째,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는 주돌봄자인 부모의 직업이 없는 집단일수록, 발달장애인 자녀의 성별이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후견제도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지만 본 연구결과만 가지고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전통적인 친족돌봄의 영역에 사회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부모 인식에 관한 문화적 요인을 밝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와 관련된 제3자 돌봄욕구개념 및 문화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연구 과제를 남겼지만,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에 관련되는 비용의 정부지원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1] 신권철,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 집문당, 2013.
- [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63009563262183&outlink=1>
- [3]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비교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pp.1221-1254, 2014.
- [4] 제철웅,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과제,” *법학연구*, 제44권, pp.153-182, 2015.
- [5]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신상관계법령의 정비: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와 정신병원등 입원절차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pp.1-50, 2012.
- [6] 제철웅, 최윤영, “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 *비교사법*, 제21권, 제3호, pp.1139-1184, 2014.
- [7] 전병주, 김건호,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岡山지역의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pp.187-197, 2013.
- [8] 박인환, “고령인지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성년후견,” *저스티스*, 제146권, 제1호, pp.5-44, 2015.
- [9] 이명현, “고령자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역할: 애드보커시(Advocacy)적 관점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제13권, 제1호, pp.104-130, 2003.
- [10] 제철웅,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개선방

- 안,” 민사법학, 제56호, pp.277-331, 2011.
- [11] 김시원, 김정연, “보완대체 의사소통 사용을 위한 행동관찰 중재가 중도 장애학생의 자기결정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제58권, 제1호, pp.167-191, 2015.
- [12] 진영, 정원철, “장애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4호, pp.249-275, 2014.
- [13] 이숙향, “중등 통합교육 현장의 장애학생을 위한 협력중심 자기결정 교수모델의 개발 및 적용 효과,” 특수교육, 제13권, 제3호, pp.173-204, 2014.
- [14] 김용득, 박숙경, “지적장애인의 거주시설 유형별 자기결정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4호, pp.79-103, 2008.
- [15] 이복실, *거주시설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 요인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16] 변용찬, 강민희, 이송희, 전광석, *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9.
- [17] 전동일, 김경란, 제철웅,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제공자의 인식 비교,”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4호, pp.11-23, 2013.
- [18] 박인환,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 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가족법연구, 제28권, 제3호, pp.171-220, 2015.
- [19] M. Daly, *Paid work, Unpaid work and welfare: Towards a framework for studying welfare state variation*, in T. Boje & Leira(eds.). *Gender, Welfare State, and the Market: Towards a new division of labour*, London: Routledge, 2000.
- [20] 장혜경, 홍승아, 이상원, 김영란, 강은화, 김고은,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6.
- [21] 신권철,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성년후견인의 역할과 한계,” 사회보장법연구, 제2호, pp.33-63, 2012.
- [22] 이명현, 강대선, “영국 권리옹호서비스의 자율적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 의사대변인(IMCA) 제도의 분석과 전망,”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0권, pp.71-96, 2015.
- [23]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74191](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74191)
- [24] <http://www.korea.go.kr/service/serviceInfo/36600000201>
- [25] Abrams, 신용하 외 역, *역사사회학(Historical Sociology)*, 문학과지성사, 1986.
- [26] 김성용, 강상경, “정신장애인 사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 Andersen모형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연구, 제54권, 제1호, pp.175-202, 2014.
- [27] 민소영, “지역거주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식 및 비공식 지원 간의 상호관계와 영향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1권, 제1호, pp.5-31, 2013.
- [28] R. Andersen and J. F. Newman,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e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Health and Society*, pp.95-124, 1973.
- [29] 김진, 김희성, 신용연, *서울시 중·장년 발달장애인가족 복지욕구조사*, 서울시복지재단, 2011.
- [30] 보건복지부, 2015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2015.

## 저 자 소 개

이 용 표(Yong-Pyo Lee)

정희원



- 2010년 1월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부회장
- 2014년 2월 : 한국성년후견학회 이사
- 2003년 3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복지, 지역복지

송 승 연(Seung-Yeon Song)

정회원



- 2010년 2월 : 성공회대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사)
- 201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정신건강복지, 장애인복지